「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 관련 클라우드 이용보고 서식을 간소화 하고,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개정
3. 규정 변경 내용
□ 클라우드 이용 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6호 서식)
 보고서식의 일부 항목을 요약표로 대체하고, 사전보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함에 따른 보안위험에 대비하여 자체평가 항목을 신설
□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개정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에 '연구·개발' 항목을 신설하여 망분리 예외적용시 보안통제 사항을 강화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 관련 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2022년 12월 27일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금융총괄팀 김서윤 조사역 (전화: 02-3145-7124, 팩스: 02-3145-7129, e-mail: sy.kim@fss.or.kr)

(붙임1)「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일부 개정안 (붙임2)「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를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의3의 "규정 제14조의2 제3항"을 "제14조의2제4항"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으로 한다.

제7조의2의 "내용는"을 "내용은"으로 한다.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별첨1"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를 "별첨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9999호, 202x. xx. xx.>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점]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구분	통제 사항								
공통	 ○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전송되는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진단치료 ○ 지능형 해킹(APT)차단 대책 수립·적용 ○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메일 시스템		○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적용 ○ 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적용							
업무용 단말기	○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토록 대책 수립·적용 ○ 전산자료 저장 시 암호화								
연구 ·개발	○ 연구·기 ○ 연구·개 정보, 기 ○ 연구·기	l발망과 내부망간 독 l발 단말기 및 시스투 개인신용정보 등) 처i l발망의 침해사고 여	인터넷 접근통제 대책 수립·적용 등립적인 네트워크 구성 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적용 및 중요정보(고유식별 리여부 모니터링 비방 및 사고대응 대책 수립·적용 외부 반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수립·적용						
	외부 단말기	공통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접속하는 경우 (간접접속)	 ● 백신 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검사 수행 ● 안전한 운영체제 사용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 ●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 보호기 설정 ● 화면 및 출력물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적용 ● 외부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의 파일 송·수신 차단 						
원격 접속		외부 단말기에서 내부망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직접접속)	○ 인가되지 않은 S/W 설치 차단 ○ 보안 설정 임의 변경 차단 ○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읽기/쓰기 차단 ○ 전산자료 (파일, 문서) 암호화 저장 ○ 단말기 분실 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적용(하 드디스크 암호화, CMOS비밀번호 적용 등)						
	내부망 접근통제	 ○ 업무상 필수적인 IP, Port에 한하여 연결 허용 ○ 원격접속 기록 및 저장(예: 접속자 ID, 접속일자, 접속 시스템 등) 							
	인증		예: ID/PW + OTP)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접속 차단						
	통신 회선	내부망 접속시 인 단말기는 인터넷	·으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인터넷 연결 차단 (단, 직접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외부 연결 상시 차단) 정 유휴시간 경과 시 네트워크 연결 차단						
	기타	원격접속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공공장소에서 원격 접속 금지							

별첨2

〈별지 제6호 서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결과를 제출합니다.

붙 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서 1부. 끝.

○ ○ ○ ○ 대표이사 (인)

(붙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서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요정보*	시스템명 및	계약체결일	서비스
제공자명	처리여부	용도		개시일

^{*}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자체평가 결과

1) 「금융회사의 정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구비 적정성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2) 클라우드컴퓨터	팅서비스 이성	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3) 클라우드컴퓨터	팅서비스 제공	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성 등어	∥ 대한 평가	결과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4) 클라우드컴퓨터	당서비스 이용	} 관련	면 업무 연속성 계획	틱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5) 클라우드컴퓨터	팅서비스 이용	용대상	정보처리 시스템	중요	도 평가결과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 안	전성	등 평가결과, 업두	^그 연속	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에 대한 정보보호	트위원회 심의	, 의	결 결과				
일시							
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심의위원							

[※] 금융회사 등은 상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분충족 및 미충족 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책임자 정보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e-mail

첨부문서:

-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5.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회의록 포함)
- 6.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서
- 7.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발생 사유, 관련 자료 및 대응계획

붙임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15조제 확인을 다. 1.~2. ② 규정 독원장 와 같다	(망분리 적용 예외) ① 규정 <u>제</u> 1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의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 (생 략) 성 <u>제15조제1항제5호</u> 에서 금융감 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나.	15조제 의 확인 같다. 1.~2. ② 규정 융감독 각 호외	(망분리 적용 예외) ① 규정 <u>제</u> 1항제3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현행과 같음) 정 제1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나 같다.	
③ (생	략)	③ (현	행과 같음)	
규정 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세14조의2 <u>제3항</u> 에 따라 감독원 성 <u>하는</u> 양식은 별지 제6호 서식 른다.	제2조의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규정 제14조의2 <u>제4항</u> 에 따라 감독원장 <u>에게 보고하는</u> 양식은 별지 제6호 서 식에 따른다.		
석·평 항에 ^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가의 내용) 규정 제37조의2제3 다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평가의 내용 <u>는</u> 별표 3과 같다.	석 · 평 항에 ^미 분석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가의 내용) 규정 제37조의2제3 다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평가의 내용 <u>은</u> 별표 3과 같다. <u>부</u> 칙 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 생한다.	
<별표 7>	>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구분	통제사항	구분	통제사항	
공통 메일 시스템	(생 략) (생 략)	공통 메일 시스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 무용 단말기	(생 략)	업무용 단말기	(현행과 같음)	
<u><신 설></u>	<신 설>	연구 <u>·개발</u>	○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 넷 접근통제 대책 수립·적용 ○ 연구·개발망과 내부망간 독립적 인 네트워크 구성	

	현행		개정안
			○ 연구·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u>대한 보호대책 수립·적용 및 중</u>
			요정보(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
			보 등) 처리여부 모니터링_
			<u>○ 연구·개발망의 침해사고 예방 및</u>
			<u>사고대응 대책 수립·적용</u>
			<u>○ 중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외부</u>
			<u>반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수</u>
			<u>립·적용</u>
원격 접속	(생 략)	원격 접속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별지 제6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싟 참 조

제 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클라우드컴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 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 정결과를 제출합니다.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서 1부.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u>지정/변경</u> 보고서 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

문서번호 20 . .

수 싟 참 조

제 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변경 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정/변경결과를 제출합니다.

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붙 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1부. 끝.

현행	개정안
ㅇ ㅇ ㅇ ㅇ 대표이사 (인)	ㅇ ㅇ ㅇ ㅇ 대표이사 (인)
(붙임)	(붙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u>지정</u> 보고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u>지정/변경</u> 보고서
1. 시스템명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명 중요정보* 시스템명 계약 서비스 제공자명 계절일 개시일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2. 업무 개요 :	<u><</u> 삭 제>
3. 업무처리 절차 ※ 업무 단계별 이용자 및 데이터 흐름 표시	<u><삭 제></u>
4. 시스템 개요 가. 시스템의 용도 나. 처리 데이터 다. 시스템 이용자 라.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마.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삭 제>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계약관련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개인신용정보 자리 계약체결 예정일 제공자명	<u><삭 제></u>
<u> </u>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u>자체평가 결과</u>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구비 적정성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

현행			개정안		
	시스템 중요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팅서비스 제 평가결과	공자의	건전성 및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4) 클라우 계획 및 약	드컴퓨팅 간전성 후	서비스 이용 학보조치에	관련 입 관한 사	₫무 연속성 항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O, X)	(O, X)		(O, X)
	5) 클라우 시스템 중 제공자의 성 계획 및 회 심의・	2드컴퓨 요도 평 건전성 • 인전성 의결 결과	팅서비스 이 가결과, 클i 안전성 등 확보조치에]용대상 라우드컴 평가결괴 대한 정	정보처리 퓨팅서비스 -, 업무연속 보보호위원
	일시				
	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심의위원				
	※ 금융회/	사 등은	상기 자체	평가 결	불과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분충족 및 미충				
	족에 대해/	서는 보	완대책을 마	련·이행	하여야 함

6. 시스템 책임자

소속	직위	이름	담 업무	연락처	e-mail

첨부문서 :

1.~2. (생략)

<신 설>

<u>3.</u> (생 략)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 시스템 중요도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등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 <u>탁 운영기준에 대한</u>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결과(회의록 포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책임자 정보

소속	직위	이름	담당 업무	연락처	e-mail

첨부문서 :

1.~2. (현행과 같음)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현행과 같음)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회의록 포함)

현행	개정안
<u><신 설></u>	6.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서
<u><신 설></u>	7.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발생 사유, 관
	련 자료 및 대응계획